					IV-E-1
제목	국문	보험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영문	Legal Nature the Medical Contract in Health Insurance			
저 자 및 소 속	국문	장욱[1], 손명세[2], 백태승[3], 이경환[4]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1], 연세대 예방의학교실[2], 연세대 법과대학[3], 변호사[4]			
	영문	Wook Jang [1], Myoungsei Sohn [2], Taesung Pak [3], Kyonghwan Lee [4]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Yonsei University[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Yonsei University, Lawyer*			
분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표자	장욱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1. 목적

의료계약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의료기관(의사)과 환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계약관계를 다루어 왔다. 이러한 의료계약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단순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의료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구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사회복지 국가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의료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의료계약의 당사자인 의료기관(의사)과 환자 관계 이외에 국가 또는 보험자를 고려하여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배상보험에서의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을 새롭게 규명해보고자 한다.

2. 방법

의료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헌들에 나타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관련법규정들에 대한 해석법학적인 접근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료현실을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계약당사자사이에 관계를 크게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로 나누어 유형별로 검토해본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자동차배상보험법상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계약에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바가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과 각각의 보험의 성질을 고려하여 분석해본다.
셋째, 앞에서 논의된 보험의료계약의 성질을 바탕으로 고찰에서 입증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분배에 대해 재고해보고자 한다.

3.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은 1)요양기관과 피보험자인 환자사이의 사법상의 계약설, 2)보험자가 요약자가 되고 요양기관이 낙약자가 되어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 3 자를 위한 계약설, 3)보험자인 공단과 피보험자인 환자 사이의 사회보험의료라는 공법적 계약설, 3)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에 국민(환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 3 자를 위한 계약과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적인 사법상의 계약이 병존한다고 보는 학설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 관리, 통제하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료계약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와

국민간에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의료계약으로 볼 수 있고, 다만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의 경우에만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료계약과 자동차배상보험법상의 의료계약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료계약에서와 유사하게 사법상의 계약설, 제 3 자를 위한 계약설, 공법상의 계약설, 제 3 자를 위한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병존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상의 의료계약은 재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의 경우 환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 의무자인 보험자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원칙적으로 산재환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등의 부담을 지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인 공단과 사업주간에 보험가입자를 위한 제 3 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고, 그 성질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이에 반해 자배법상의 의료계약은 공적 보험에서와는 달리 보험자는 의료급여 등을 결정할 권한은 없고 다만 보험계약에 의해 치료비용부담의 의무를 질뿐이므로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배상보험법상 의료계약은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고찰

오늘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의료행태에 따라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을 달리보고자 하는 이유는 의료과오소송에서의 계약당사자들간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입증책임을 재분배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의료공급자에게는 입증책임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다만 공적 의료영역에서는 의료공급자측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보험자인 국가 또는 공단이므로 입증책임의 귀속주체가 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제공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과오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의료영역에서 국가기관인 보험자는 환자와 의료기관 어느 쪽에도 귀책시키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